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1. 2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2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22. 6. 14.)에 따라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기타 조문을
현행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규정 (안 제2조제3호)
- 나. 조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관련 조문 현행화 (안 제18조)
-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2015년 기준 삭제 (안 별표2)
- 라. 기타 명칭 및 표현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 10. 13. ~ 11. 2.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22. 6. 14.)에 따라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기타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2. 6. 14.)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제3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관련 신고서 및 처리실적 보고 등 서식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였으며,
- 안 별표2에서는 2015년 3월 19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 시 규정하였던 2015년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적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15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수수료를 삭제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2. 6. 14.)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2022. 6. 14.>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